

제정 : 2022.04.26.



ESG 위원회 운영규정

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목적

이 규정은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

- ①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 구성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정원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위원장

- ① 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그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선임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소집권자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소집절차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 일 전에 각 위원에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결의방법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9 조 부의사항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ESG 활동목표 및 중장기 정책
 2. 환경, 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및 대응책
 3. 정기적 비재무 리스크 요인 검토 결과
 4.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
 5.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 6. 기타 ESG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ESG 관련 리스크 관리정책
2. 연간 ESG 관련 활동계획
3. 연간 ESG 관련 활동 평가 및 개선
4. ESG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현황
5. 기타 회사가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

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의사록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 12 조 보고

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이사회, 대표이사와의 관계

- 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이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제 1 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 내지 의견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제 14 조 간사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환경안전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위원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5 조 규정의 개폐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